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0
----------	-----

2023. 3. 24.(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 라. 상정일자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3월 22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가. 제안이유

- 그동안 4차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운영하였으나, 4차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주요 산업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아진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본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본 조례는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도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나. 4차산업 범주에 포함되는 주요 산업별로 개별 규정이 필요하여 각각의 조례를 제정,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사문화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도정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행계획과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1.1.>

1. 당연직 위원 : 기획관리실장, 신성장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2. 위촉직 위원 : 연구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태스크포스팀원에게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를 제안·기획·자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칙(2018.4.6. 조례 제415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2020.1.1. 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장 변인순